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1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포함)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서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등급변경 및 갱신할 경우에도 제9조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4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는 기관과 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서비스 관련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서비스의 대상은 수급자인 본인에게만 지원하고 생활근거지인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 중인 대상자의 간병을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족과 대상자에게 있다.
7. 기관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본인부담금 연체 시)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월 이용 한도 내에서 서비스 제공되어 발생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 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본인 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이 85%이고 일반 개인 부담금이 15%임. (감경대상자의 경우 9%와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②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등급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비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④ 대상자 어르신의 병원 입원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대상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⑥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7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③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④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⑤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⑥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 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인정기간 까지 유예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